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85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미애 · 김위상 · 박성민
성일종 · 이현승 · 배준영
최수진 · 이달희 · 조은희
조정훈 · 김 건 · 김선교
강명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은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간 활용도의 저하와 지역 활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실제 동물 도입에 따른 관리·비용·윤리적 부담 없이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태·환경·교육적 가치를 구현하는 이른바 ‘동물 없는 사파리’, 야간 미디어 숲, 디지털 도슨트 및 무장애 안내 시스템 등

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의 공공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디지털 공원”이란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체험·교육·문화·관광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장의2(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디지털 공원의 조성·운영 및 지원

제25조의3(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익적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공원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원을 디지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디지털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업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2. 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야간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설
3. 디지털 도슨트,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
4.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지원 장비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공원의 공익적 활용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설 및 콘텐츠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야간 운영 및 디지털 경관 연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 운영 및 경관 연출의 기준·절차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참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의 제공
2. 공공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3.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4.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의6(비용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디지털 공원”이란 증강 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체험·교육· 문화·관광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현 등 공익적 기 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을 말 한다.</u>
4.·5. (생 략) <u><신 설></u>	4.·5. (현행과 같음) <u>제4장의2 디지털 공원의 조성· 운영 및 지원</u>
<u><신 설></u>	<u>제25조의3(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고 도화하고 공익적 활용을 증진 하기 위하여 디지털 공원을 설 치하거나 기존의 공원을 디지 털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② 디지털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업을 다른</u>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증강현실·가상현실을 활용한 생태·환경·역사·교육 체험 콘텐츠

2. 미디어아트, 경관조명, 프로젝션 매핑 등 야간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설

3. 디지털 도슨트, 위치 기반 안내, 체험형 미션 투어 등 스마트 안내 시스템

4.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지원 장비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공원의 공익적 활용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설 및 콘텐츠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5조의4(야간 운영 및 디지털 경관 연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개장, 경관조명, 미디어 연출 등 디지털 경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야간 운영 및 경관 연출의 기준·절차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민관협력 및 사회공헌 참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업,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의 제공
2. 공공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3.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u><신 설></u>	<u>4.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성 확보 방안</u> <u>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제25조의6(비용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u>
---------------------------	---